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593

발의연월일: 2024. 9. 3.

발 의 자: 박균택 · 김현정 · 김용민

김태선 • 이건태 • 전현희

황 희·노종면·황운하

김문수 • 한민수 • 정준호

이개호 • 박지혜 • 양부남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하하 거나 누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재판, 수 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으로 법원, 검사,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 자정보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음.

최근 검찰이 수사를 목적으로 수사 대상인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약한 정치인, 언론인, 민간인들의 통신이용자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렇게 수집된 통신이용자정보는 본래의 목적인 수사에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수 있는 정보를 생산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있음.

한편, 통신비밀의 보호에 대한 규정이 현행법에 규정되는 것이 법률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통신이용자정보의 무분별한 열람과 제출을 방지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 검사, 정보수사기관 등의 통신이용자 정보 열람 또는 제출 요청 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문들 을 개정하고, 법률 체계를 고려하여 해당 조항들을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고자 함.

이에 따라 해당 조항들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균택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36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95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104조제5항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했 개 정 아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① •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①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 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 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 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 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 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범 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 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 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 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통신이용 자정보"라 한다)의 열람 또는 제출(이하 "통신이용자정보 제 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 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 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 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 일

④ 제3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시 제공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범위를 기재한서면(이하 "정보제공요청서"라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과 제4항의 절차에 따라 통신이용 자정보 제공을 한 경우에는 해 당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대장과 정보 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갖 <삭 제>

<삭 제>

추어 두어야 한다.

⑥ 전기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신 이용자정보 제공을 한 현황 등 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 통신사업자가 보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제5항에 따른 관 련 자료의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 <삭 제>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한 자가 소속된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알 려야 한다. 다만, 통신이용자정 보 제공을 요청한 자가 법원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알 려야 한다.

⑧ (생략)

⑨ 정보제공요청서에 대한 결 | 재권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삭 제>

⑧ (현행과 같음) <삭 제>

제83조의2(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삭 제> 을 받은 사실의 통지) ① 제83 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 보 제공을 받은 검사, 수사관서 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 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 지유예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 다)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 야 하다.

- 1.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
- 2.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자
- 3.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짜
- ② 수사기관등은 제1항에도 불 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 1. 국가 및 공공의 안전보장을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오
- 2.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4.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경우
- 5.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유예의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따른다.
-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해소될 때까지의 기간
- 2.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사유가 있는 경우: 두 차례에한정하여 매 1회 3개월의 범

위에서 정한 기간

- ④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 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경우로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
- 2.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 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 단체의 구성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
- ⑤ 수사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 용자정보 제공을 한 전기통 신사업자에 대한 요청의 경우: 해당 당사자의 통신이용 자정보에 변경이 있는지 여부
- 2. 그 외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요청의 경우: 그 당사자 가 해당 전기통신사업의 이용자인지 여부
- ⑥ 수사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 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① 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 정보자료 제공에 관한 사용료 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6 항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8 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절차,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유예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의3(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행) ① 수사기관등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1.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신

 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

 실의 통지업무
- 2. 제83조의2제5항에 따른 확인요청 및 이에 대한 회신자료접수 업무
- 3. 제83조의2제6항에 따른 주민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 청 및 이에 대한 회신자료 접수 업무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는 해당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신이용자정보를 처리할 수 있

<삭 제>

다.

- ③ 수사기관등은 제83조의2제2 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 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 의 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행기관에 통보하 여야 한다.
- ④ 대행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통지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통지관리대장과 제3항에 따른 통지유예 통보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대행기관은 이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⑤ 대행기관이 제1항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83조의2제6항 및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심사를 받으면 「주민등

록법 |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 를 거친 것으로 본다.

- ⑥ 대행기관은 이용자의 통신 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수사기관등은 대행기관에 대하여 업무의 대행에 드는 비 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 ⑧ 대행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제83조의3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 면서 알게 된 타인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 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3조의4(대행기관에 대한 관리 | <삭 제> ·감독) ① 수사기관등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 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 거나 대행업무의 수행 실태 등

- 을 조사할 수 있다.
- 1.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누락 여부와 그

 통지 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

 에 관한 사항
- 2.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 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유 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기 술적 보안조치에 관한 사항
- 3. 대행기관의 업무 수행능력및 기술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 4. 제83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관리대장과 통지유예 통보관련 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사항
- ② 수사기관등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 1. 제83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관리대장 또는 통지유예
 통보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
 지 아니한 경우
- 2.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

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유 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 기 술적 보안조치를 하지 아니 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

- ① · ② (생 략)
- ③ 제83조의4에 따른 수사기관 | <삭 제> 등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 할 수 있다.
-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94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2. (생 략)
 - 3. 제83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 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한 자 및 그 제공을 받은 자
-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7. (생 략)
 - 8. 제83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 <삭 제>

제9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9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 ② (현행과 같음)

<u>.</u>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제95조(벌칙)
1. ~ 7. (현행과 같음)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정보 를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 의 용도로 이용한 자

- 제104조(과태료) ① ~ ④ (생 전략)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8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5호·제6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 1. ~ 12. (생략)
 - 13. 제83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 런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갖추어 둔 자
 - 14. 제83조제7항을 위반하여 중 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신이 용자정보 제공 사실 등이 기 재된 대장의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15. ~ 17. (생략)

⑥ (생략)

세104조(과태료) ① ~ ④ (현행
과 같음)
5
1. ~ 12. (현행과 같음)
<u><삭 제></u>

<삭 제>

15. ~ 17. (현행과 같음)⑥ (현행과 같음)